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2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개요	5
2. 개별 검토	20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20
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4.
3.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요

개정안은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던 전기사업 허가, 전기공급약관 인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과 관련된 법령상 업무와 그 권한 일체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에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역할을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인 전기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제6장, 제53조~제6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¹⁾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하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 ----- -----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u>총리령</u> 으로-----

1) 주요 조문만을 명시하였으며, 전체 조문대비표는 의안원문 참조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
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
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2. (생략)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총리령으로-----.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② -----
-----총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1. 2. (현행과 같음)

④ -----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⑤ -----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6. (생략)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생략)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

총리령으로-----.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허가
를-----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전기가스열위원회가-----

5. 6. (현행과 같음)

7. -----전기가스열위원회의---

8.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9. (현행과 같음)

10. -----전기가스열

원회의 전기가스열위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전기가스열위원회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생략)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⑧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삭 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
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
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
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
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
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
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
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

<삭 제>

<삭 제>

- 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
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
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
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
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
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
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
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
항
-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
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
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

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전기위원회의 제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

<삭 제>

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 ·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

현행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전기사업 허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전기요금 등을 정하려면 관련 내용을 담은 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전력수급 체계 구성을 위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결정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에 대하여 전기사업 인·허가, 전기요금 관련 규제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약관을 통해 정하는 것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관련 인가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은 직접적으로 국민 생활에 공공요금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늘려 국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가 변동요인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은 이에 맞추어 인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전력판매의 역마진구조가 형성²⁾되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경영위기가 초래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전은 계속되는 영업이익 적자와 누적 부채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경영위기³⁾를 겪고 있으며 2022년 말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6배)로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87,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지만,

전기요금이 발전원가 인상을 반영하여 한전의 경영적자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오르지 않아 한전채 발행 규모가 늘린 사채발행한도를

2) 일례로, 2022년 기준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67.3조원이었으나 구입전력비는 약 92.7조원 수준이었음

3) 2024년 한전은 3.2조원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으나, 그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24년 12월 기준 총부채는 약 120.1조원에 달함

초과할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며⁴⁾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지는 등 경영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⁶⁾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급약관의 인가뿐만 아니라 전력부문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권한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의 결정 과정에 대외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4) 2024년 기준 한전 사채배수는 4.31배이며, 2027년 12월까지 2배 이내로 축소해야 함

5) 2024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8조 3489억원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기존 부채가 방대하여 2023년 기준 연 이자 부담이 약 4조 4,500억원으로 여전히 부채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

6)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음.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부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주요업무	주체	
	현행 법률	개정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 열위원회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인가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인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마련 및 감시·조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 계획의 승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전기신사업자 등록 및 약관의 신고 대상		
전기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전기위원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독임제 행정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② 기존에 별도로 수행하던 전기와 가스 등 각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이 발의되어 있고, 또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가 의결되어야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개별 검토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대표되는 독임제 행정청과 행정위원회로 대표되는 합의제 행정청으로 구분되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청과 달리 합의제 행정청은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수의 위원이 합의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따라서, 합의제 행정청은 독임제 행정청에 비해 정책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한 금융 분야⁷⁾나 분쟁·조정 분야⁸⁾에 적합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독임제 행정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전력수급 안정화, 전력산업 진흥 등 정책기능과 전기사업 인·허가, 전기요금 인가 등 규제기능을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제10조의3⁹⁾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7)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합의제 행정청임

8) 대부분의 분쟁·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9)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제10조의3(전기가스열위원회) ①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등(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둔다.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 및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

행정청인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전력정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전력산업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면 산업부문이나 통상부문의 의사결정이 전력부문에 간섭하는 영향¹⁰⁾을 줄일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전기부문의 전문가로 위촉한다면 전력산업 정책 및 규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전기요금이 연료 가격이나 환경오염 비용 등 경제적인 요인을 반영하기보다는 물가안정이나 산업 육성 등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지만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의 인가와 같은 주요한 결정은 현행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

2. 에너지시장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예컨대,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첨단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항	주체	조문내용
제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5조제2항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제16조제2항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고시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그리고, 전기위원회의 위원 구성¹¹⁾을 보면 공무원, 법조인, 교수, 전기 분야 민간기업 종사자, 전기 관련 단체 종사자로 전반적인 위원 구성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와 유사함.

11) 「전기사업법」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 및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 구성

전기위원회	전기가스열위원회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5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 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전 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 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 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 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독임제 행정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집중된 전력부문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부족한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성 등을 일부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같이 전력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대폭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소비자·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수급의 안정, 전력부문 규제·감독 기능의 독립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의 전기위원회 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유지하고 전력정책에 대한 역할은 지금과 같이 사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되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전력시장과 계통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은 전기위원회에 이관하여 규제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전기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일부 권한을 전기위원회로 이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더라도 물가안정을 관리하는 재정당국과의 협의에서 독립적으로 적정하고 객관적인 수준의 전기요금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개정안 및 정부 수정의견에 따른 전기위원회로의 기능 이관 사항

	현 행	의원안	검토의견
산 업 부	- 전력수급 안정(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 전기의 수급조절 - 전력산업 경쟁촉진 - 전력산업 기반조성		- 전력수급 안정(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 전기의 수급조절 - 전력산업 경쟁촉진 - 전력산업 기반조성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요금 등 인가 - 사실조사·금지행위 제재 등 전력시장 감시		
	- 시장운영규칙 제·개정 등 전력시장 설계 - 전력시장 거래정지 등		- 시장운영규칙 제·개정 등 전력시장 설계 - 전력시장 거래정지 등
	거래가격 상한결정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제·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제·개정
	전력계통 감독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전 기 위 원 회	전기사업 분쟁 재정	- 전기사업 분쟁 재정 - 전력수급 안정(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 전기의 수급조절 - 전력산업 경쟁촉진 - 전력산업 기반조성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요금 등 인가 - 사실조사·금지행위 제재 등 전력시장 감시 - 시장운영규칙 제·개정 등 전력시장 설계 - 전력시장 거래정지 등 - 거래가격 상한결정 -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제·개정 - 전력계통 감독 -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전기사업 분쟁 재정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요금 등 인가 - 사실조사·금지행위 제재 등 전력시장 감시
			거래가격 상한결정
			전력계통 감독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개정안이 전력수급과 관련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할 때 기존의 전기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집단에너지(열) 시장에 대한 사항을 단일 규제기관의 권한으로 하여 에너지시장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인 전력과 가스 및 집단에너지(열)는 에너지 자체의 특성과 판매 구조가 상이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¹²⁾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데에는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제약¹³⁾이 있으며, 전국의 전력망(계통)이 하나로 연결된 특징으로 인해 한전이 전력소매시장에서 판매자 지위를 독점하고 있음.

반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면 개별 소매기업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 아래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12) 2022년 기준, 전체 전력판매량(5,479억 3,300만kWh) 중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2,960억 3,600만kWh)임.

13) 현재 송전망 건설 지연과 발전설비 출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나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주요 전력수요 지역에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스를 공급하고, 거주시설의 난방이나 발전 원료로 주로 사용됨.

이와 같이, 전기는 가스와 달리 모든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고 계통 운영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출력과 더불어 주파수 등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¹⁴⁾해야 함.

또한, 집단에너지(열)는 가스와 유사하게 열수송관으로 공급되나 도매단위의 사업자 없이 지역별로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원에 따라 시장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리체제도 상이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열)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일하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금 결정과 시장 규제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기와 달리 가스나 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조직을 법률로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있는¹⁵⁾ 등 에너지원별로 정부

14)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한 공공기관임.

15) 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지침에 근거해 가스 도매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천연가스 도매요

개입 수준이 다르고 요금 결정 체계도 상이하여 전기·가스·집단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단일 규제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1

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집단에너지는 산업부 고시에 근거해 사업허가 관련 사항을 다루는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함.